



제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북한이탈주민의 국민연금 가입 및 보험료 지원〉

■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5681호)

2026. 3.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전문위원 연 광 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송재봉의원 등 18인
2. 발 의 일 : 2025. 12. 29.
3. 회 부 일 : 2025. 12.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한 적응·정착을 위해서 국민연금 최저가입기간(5년 단축) 특례 등 각종 보호·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 부족, 열악한 경제 상황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이 미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국민연금 가입 유도를 통한 노후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호대상자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지원 및 국민연금 보험료 최초 1개월 납부분 지원을 신설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률을 제고함과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노후 소득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제4항 및 제26조의2제3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동안 국민연금 가입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안 제11조제4항 신설), 통일부장관은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는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최초로 부담하여야 하는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안 제26조의2제3항 신설),
-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이 국민연금 제도의 수혜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1조(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국민연금 가입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6조의2(국민연금에 대한 특례) ① · ② (생략) <u><신설></u>	제26조의2(국민연금에 대한 특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통일부장관은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는 보호대상자(「국민연금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연

③ (생략)	<u>금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보호대상자는 제외한다)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연금보험료 중 최초로 부담하여야 하는 연금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민연금을 가입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라 함) 제8조에 따르면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는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법 제11조),¹⁾ 사회적응교육(법 제15조),²⁾ 직업훈련 및 취업보호(법 제16조 및 제17조),³⁾ 주

1) 제11조(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진출할 때까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받는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동안 신원 및 북한이탈 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그 밖에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제15조(사회적응교육 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본

거지원(법 제20조),⁴⁾ 정착지원금 지급(법 제21조),⁵⁾ 교육지원(법 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2.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성평등 관점에서의 통합교육
3.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4. 진로지도 및 직업탐색을 위한 교육
5. 초기 정착지원제도 안내를 위한 교육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교육 외에 보호대상자에게 거주지에서 별도의 적응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제3항에 따른 적응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6조(직업훈련)** ① 통일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이하 “보호대상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을 받으려는 보호대상자등은 직업훈련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보호대상자등에 대하여 정착지원시설 내 교육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고용노동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대상자등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연수실시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등이 보호대상자등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실시기간은 대상자의 직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3개월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직업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취업보호 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3년간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다만, 사회적 취약계층, 장기근속자 등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보호 기간은 실제 취업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이하 “취업보호대상자”라 한다)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업보호대상자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사업주가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할 때에는 그 취업보호대상자가 복한을 벗어나기 전의 직위, 담당 직무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등과 협의하여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분야와 복한에서의 경력 등을

24조)6) 등의 정착과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동법 제26조의2⁷⁾는 제8조에 따른 보호 결정 당시 50세 이상

고려하여야 한다.

4) 제20조(주거지원 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거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그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2년간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하게 된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하 “소유권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유권등의 등기신청은 보호대상자를 대리하여 통일부장관이 한다. 이 경우 소유권등은 양도나 저당권 설정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그 등기신청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주택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⑥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거주지가 노출되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의사, 신변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주거 이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지원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제21조(정착금 등의 지급)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정착 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이하 “정착금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착금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활용 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로금(報勞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착금품과 보로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착금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다.

6) 제24조(교육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이, 수학능력(修學能力), 출생지,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학력 진단·평가, 교육정보관리, 교육, 연수 및 학습활동의 지원 등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지원과 지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7) 제26조의2(국민연금에 대한 특별) ① 제8조에 따른 보호 결정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보호대상자는 「국민연금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1.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되는 사람: 60세가 되는 날

2. 60세가 된 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사람: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의 금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50에 해

60세 미만인 보호대상자는 「국민연금법」 제61조⁸⁾에도 불구하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지 않아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은 국민연금 수령에 대한 특례만을 규정하고 연금보험료 지원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국민연금 가입률이 저조한 한편, 국민연금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미비하여 국민연금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노후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정착지원시설 보호 기간 중 보호대상자의 국민연금 가입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따라 정착지원시설 보호 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하면 향후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 쉬워져 노후 빈곤 문제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정착 초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연금보험료 지원이 이루어질

당하는 금액에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다.

③ 보호대상자의 국민연금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다.

8) 「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경우 장기적으로 노후 소득 보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로는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 보험료 지원”⁹⁾(월 소득 270만 원 미만, 본인 부담 보험료의 80%, 월 최대 82,800원, 최대 36개월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¹⁰⁾(재산세 과세표준 6억 미만, 연소득 1,680만원 미만, 본인 부담 보험료의 50%, 월 최대 45,000원, 최대 12개월 지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¹¹⁾(본인 부담 보험료의 50%, 최대 월 45,000

9)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
2. 근로자의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연금보험료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① 영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은 해당 근로자가 국민연금 최초가입자이거나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은 버린다)으로 하되, 월 최대 82,800원까지 지원한다.

②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료는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0)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로서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것. 다만,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아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보험료 지원수준) 영 제73조의5 제1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 수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준소득월액 103만원 이하인 경우 : 연금보험료의 2분의 1 지원
2. 기준소득월액 103만원 초과인 경우 : 46,350원 지원

11)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과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에게는 제8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31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특례) 사업장가입자

원) 등이 있고, 이외에 별도의 법률에 근거하여 특수직종에 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에 관한 근거를 둔 입법례의 하나로 “가사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이 있는바,¹²⁾ 이 경우는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 보험료 지원”과 같은 수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보호 기간 중 신규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에 해당하여, 신규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는 북한이탈주민은 현재 활용할 수 없는 상황임.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에 관하여는 기존의 지원 제도, 경제 여건 및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다만,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할 경우 저소득층이나 농어업인 지원

또는 임의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당연적용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사용자이거나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게는 제8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2031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

- 1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조세 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3조(지원수준) ②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수준은 가사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각각의 국민연금 보험료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은 버린다)으로 하되,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가사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은 버린다)으로 한다.

사례를 참고하여 보험료 일부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도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통일부는 탈북민의 국민연금 가입 및 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는 입장으로, 북한이탈주민은,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고, 일용직·단순 노무직 종사자의 비율(27.1%, 일반국민 14.3%)¹³⁾이 높아 국민연금 가입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으므로, 「북한이탈주민법」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조기에 가입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탈북민의 노후 대비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기획예산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취·창업 지원, 취업보호 등 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북한이탈주민 상당수가 임금근로자 등으로 경제활동 중이며 국민연금 등에 이미 가입하고 있어 일반국민 대비 가입률이 현저히 낮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임.¹⁴⁾ 또한, 현재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일반국민(10년)보다 완화된 연금수급 가입기간(5년)이 적용 중이므로

13) 「2025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은 약 40% 수준으로 추정, 일반국민 가입률(67%) 대비 낮은 수준임

(①북한이탈주민 고용률 (61.3%) ②임금근로자 (77.4%) ③임금근로자 중 연금가입자 (76%)이므로,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 임금근로자 연금가입자는 ①×②×③ = 36% 수준)

14) 「2025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고용률: (일반) 62.9 vs. (북한이탈주민) 61.3% (이중 77.4%가 임금근로자)

< 국민연금등 공적보험 가입률(%) >

	일반국민	북한이탈주민
전체	67.0 ¹⁾	-
(임금근로자)	68.5 ^{국민연금}	73.3

※ 공적보험 가입자 / 15~64세 인구 3,502만 (국민 2,164, 공무원 130, 사학 33, 군인 18만명)

과도한 지원은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복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하나원 퇴소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연금보험료 지원 시 노후소득보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보험료 지원으로 납부이력이 생성 시 적용 제외 기간에 대하여 추후 납부가 가능하여 가입기간 확보에 유리할 것이나,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267